#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2누611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74	
ÇΙ	

원 고 A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오민영, 이형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박영동

변론종결2024.7.4.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 1. 피고가 2022. 8. 24.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2) 주식회사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3)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농업법인 J주식회사(이하개별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표시는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고 하며, 'E'은 'E', 'G'는 'G', 'I'는 'I', 'H'은 'H', 'J'은 'J'이라 한다)는 오리 신선육을 생산 · 판매하고 있거나 생산 · 판매하였던 사업자들로서 모두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 등 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기재와 같다.

#### <표 1> 원고 등 사업자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자	연도	자본금	애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설립일
		2020	121,724	439,064	△3,901	△3,150	
1	F	2019	121,724	455,392	△6,757	△7,734	2010. 11. 24.
		2018	121,724	450,766	18,805	13,601	

구분	사업자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설립일
-		2020	500	233,800	1,738	3,028	
2	С	2019	500	220,298	△1,248	△3,707	2009. 8. 14.
		2018	500	176,103	14,057	9,333	
		2020	3,253	123,887	△1,871	△2,272	
3	D	2019	2,053	114,132	5,300	3,755	2000. 4. 27.
		2018	2,053	94,884	13,508	9,038	
		2020	56,593	332,957	△18,910	△15,100	
4	Е	2019	56,593	243,157	△6,079	△2,808	2011. 8. 8.
		2018	56,593	216,831	8,130	1,757	
		2020	16,687	75,401	△7.327	△8,185	
5	G	2019	12,085	71,578	△4,985	△5,618	2002. 3. 28.
		2018	12,085	83,824	5,559	4,855	
		2020	1,200	16,918	84	217	
6	I	2019	1,200	17,881	202	53	2005. 8. 9.
		2018	1,200	21,325	562	316	
		2020	1,003	38,263	△841	△1,487	
7	Н	2019	1,003	28,258	705	116	2006. 6. 27.
		2018	5,016	31,936	2,636	1,849	1
		2020	250	765	△697	△693	
8	J	2019	250	3,213	△1,104	△252	2005. 5. 31.
		2018	250	15,582	△720	△3.024	1
		2020	300	0	△396	△168	
9	원고	2019	300	0	△413	△49	2007. 12. 28.
		2018	300	7,518	1,068	2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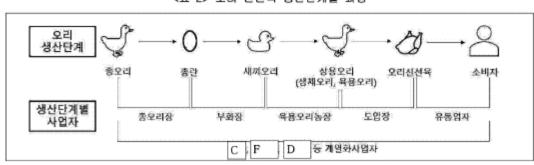
# 나. 시장구조 및 실태

# 1) 오리 신선육 생산·유통과정

### 가) 오리의 생산단계별 개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육되는 상업용 오리를 상용오리(CD, Commercial Duck)라고 하고, 이를 '생체오리' 또는 '육용오리'라고도 한다. 상용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부모오리를 종오리(PS, Parent Stock), 종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순수계통의 오리를 원종오리(GPS, Grand Parent Stock)라고 한다.

종오리가 낳은 알을 '종란'이라 부르며, 종란을 부화하면 '새끼오리'가 된다. 새끼오리가 성장하여 도압 및 유통 가능할 정도의 상용오리가 되면, 이러한 상용오리를 도압등 1차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오리 신선육'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생산단계별 과정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오리 신선육 생산단계별 과정

# 나) 오리 계열화사업

축산계열화사업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말한다(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오리 농가의 파산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오리 계열화사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분업화된 생산-유통-판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계열화사업 육성정책시행결과 농가소득의 안정, 생산ㆍ유통비용 절감, 소비확대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2019년 기준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의 계열화사업자 비율은 96.6%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오리 생산판매업자가 대부분 계열화사업자로 구성됨에 따라 오리고기 판매가격이 오리 농가에 지급되는 위탁사육 수수료와 연동되게 되어 오리 판매가격이 하락할경우 직접적으로 오리 농가의 수익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 다)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P 유한회사 등으로부터 '새끼종오리'를 구매한 후, 직영 또는 계약 농장(종오리장)에 공급하여 약 6개월 동안 사육한다. 종오리는 보통 25주령이 되면 산란을 시작하며 78주령까지 종란을 생산하다가 도태된다.이후, 종오리가 생산한 종란을 부화장에서 4주가량 부화시키면 새끼오리가 생산되며, 이렇게 생산된 새끼오리를 부화장에서 다시 농가로

이동시켜 사육을 시작하는데,이를 '입식'이라고 한다. 새끼오리를 키워 상용오리로 성장시키는 과정은 통상 6주가량이 소요된다.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는 다 자란 상용오리를 도압장에서 '도압'하여 통오리 등 신선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육으로 하여 육가공품인 훈제제품을 생산한다. 오리 공급물량이 과도하면 추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냉동하여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냉동통오리, 냉동 완포 등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 라) 오리 신선육 제품 종류 및 가격결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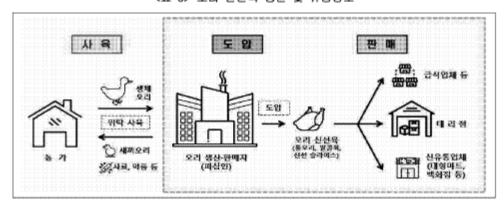
오리 신선육 제품에는 통오리, 발골육, 신선 슬라이스가 있다. '통오리'는 신선 통오리와 토치통오리로 구분되는데, '신선 통오리'는 상용오리를 도압만 한 것이고, '토치통오리'는 도압한 통오리를 잔털 제거를 위해 불로 살짝 그을린 것을 말한다. 통오리를발골한 것을 '발골육(완포)'이라 하고, 이를 슬라이스 기계로 썰어서 생산한 제품이 '신선 슬라이스'이다.

오리 신선육 가격은 통오리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발골육 가격은 통오리 가격에 발골비를 합하여 결정되고, 신선 슬라이스 가격은 발골육 가격에 슬라이스 비용을 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통오리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오리 신선육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 마) 오리 신선육 제품의 유통경로

오리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중간 유통상), 신유통업체(대형마트 등), 급식업체(기업,학교 등 급식)에 주로 판매되고 있다. 유통채널별로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대리점 거래 비중이 85.5%로 가장 높고, 신유통업체 거래 비중은 7.2%, 급식업체 거래 비중은 7.3% 순인 것으로 파악된다.4)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계열화사업자)로부터 大도매점, 小도매점, 소규모 마트, 재래시장 또는 식당 등의 거래과정을 거쳐 유통된다. 오리 신선육의 생산 및유통경로는 아래〈표 3〉기재와 같다.

<표 3> 오리 신선육 생산 및 유통경로



# 2) 통오리 대리점 판매가격 결정구조

통오리 제품은 중량에 따라 일정한 규격('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중량에 비례하여 가격도 높게 책정된다. 통오리는 16호부터 28호까지 다양한 크기로 구분되며, 아래〈표 4〉기재와 같이 20호(2kg)를 기준으로 호수당(100g) 일정 가격(100원~200원)이 가감된다.

<표 4> 중량에 따른 통오리 호수 구분

호수	20章	21호	22호	23章	24章	25章	
중량(도압 후)	2.0kg	2.1kg	2.2kg	2.3kg	2.4kg	2.5kg	

통오리 판매가격은 20호 가격을 기준으로 호수당 100원~200원을 가감한 후 다시 할인금액을 빼고 산정된다. 다만, 할인금액은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리점이 물량을 얼마나 공급받는지 등에 따라 대리점 등급을 나누고 대리점 등급별로 할인금액을달리 책정한다. 즉, C, D, E, F 및 G과 같은 5대 계열화사업자는 대리점 등급을 구분하여 할인금액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점유율이 작은 사업자들은 대리점 등급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대리점들이 주문하는 물량에 따라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 3)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2016년 국내 전체 오리 도압수를 기준으로 원고 등 사업자들의 도압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은데, 5대 계열화사업자(C, D, E, F, G)가 전체 점유율의 약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원고 등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92.4%에 이른다.

# 〈표 5〉 국내 오리 도압수 기준 점유율 현황(2016년 기준)

업체명	도압수(首)	점유율(%)
С	18,674,745	26.1
D	8,164,782	11.4
E	8,042,144	11.2
F	6,790,286	9.5
G	6,539,667	9.2
Н	5,136,265	7.2
원고	5,123,499	7.2
I	3,897,562	5.5
J	3,622,355	5.1
소계(이상 사업자들 합계5)L과 M의 점유율까지 합산할 경우, 점유율은 98.4%에 이른다.)	70,713,565	92.4
L	3,325,529	4.7
М	952,856	1.3
R	443,875	0.6
S	529,427	0.7
Q영농조합법인	144,228	0.2
Т	57,844	0.1
합계	71,445,064	100.0

#### 다. 피고의 처분

# 1) 이 사건 공동행위

가) 피고는, 원고 등 사업자들이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① 2012년 4월에 새끼오리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라고한다), ② 2016년 1월, 4월 및 11월에 각각 '종오리·종란'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이하'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라고 한다), ③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통오리 20호의 가격 인상, 할인금액의 폭 및제비용(토치비, 발골비 등)의 하한선 등을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라고 하고, 이하 위 행위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거나가 구역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위	사업자	위반기간	합의 내용	적용 법조
1	6개사6)D(L, M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G, I, H, 원고, J이 해당되고, 이하 위 회사들을 통들어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 등 6개사'라고 한다.	2012. 4. 12.	입식량 감축	제19조 제1항 제3호
2	9개사7)C, D, E, F, G, H, 원고, I, J이 해당된다.	2016. 1. 13.~2016. 11. 10.	종오리 · 종란 감축	"
3	8개사8)C, D, E, F, G, 원고, I, J이 해당되고,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 등 8개사'라고 한다.	2016. 1. 13.~2017. 8. 10.	통오리 기준가격 인상 등	제19조 제1항 제1호

### 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이에 피고는, 2022. 8. 24.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①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별지 1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②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및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전부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1조 제1항 [별표 2], 구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 IV.의 규정에 따라 아래 3)항과 같이 산정한 509,000,000원의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이 사건 시정명령과과징금납부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 과징금의 산정근거

### 가) 공동행위의 수

피고는, ①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가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 및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 사이에 3년 9개월 정도로 상당한 간격이 있어 각 행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는 사실상 실행되지 않아 그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 및 가격인상 등 행위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는 나머지 공동행위와 별개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는 ①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와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는 모두 오리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 또는 유지시키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진 점, ② 위 각 행위는 모두 2016. 1. 13.부터 2017. 8. 10.까지 단절됨이 없이 지속되었고, 원고 등 사업자들 중 누구도 법위반기간 중에 이러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위 각 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H을 제외하고 동일하고, 회사 합병 등에 따른 일부 변동이 있었을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와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라고판단하였다.

# 나)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

# (1) 관련매출액

피고는,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는 2012. 4. 12.경 이루어졌으나 이후 합의 사항이 실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의 관련매출액을 2012. 4. 12.에 판매한 오리 신선육의 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원고의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 관련 매출액은 아래〈표 7〉 기재와 같다.

<표 7>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의 관련매출액

위반기간	소계	관련매출액
2012. 4. 12.~2012. 4. 12.	50,739,100	50,739,100

#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피고는,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는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 감축을 합의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합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점, 위 합의로 인하여 가담한사업자들의 부당이득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 (3) 구체적 산정기준

### (가) 과징금 산정기준

피고가 위 (1)항 기재 관련매출액에 위 (2)항 기재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원고에 대한 산정기준은 1,014,782원이다.

# (나) 1차 조정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

### (다) 2차 조정

피고는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가 실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과징금고시 IV. 3. 다. (1)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원고가 조사단계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구 과징금고시 IV.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하였다.

다만, 구 과징금고시 IV. 3. 가.에 따르면, 2차 조정 시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8〉 기재와같다.

#### <표 8>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산정기준	1차 조정	2차 조정	2차 조정 산정기준
1,014,782	-	50% 감경	507,391

###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구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0원으로 결정하였다.

#### <표 9>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단위: 원)

2차 조정 산정기준	부과과징금 조정	부과과징금
507,391	-	0

#### 다)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 및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

### (1) 위반기간

피고는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와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았으나, 위 각행위의 합의 내용이 다르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을 위해 각 행위별로 위반기간을 검토하였다.

#### (가)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

#### ① 개시일

피고는, 원고 등 사업자들이 2016. 1. 13. 계열화협의회 또는 계열화사업자 영업책임자 회합으로 종오리·종란 감축 합의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개시일을 2016. 1. 13.로 보았다.

#### ② 종료일

원고 등 사업자들이 2016. 11. 10.에 3차 종오리 · 종란 감축 합의를 한 이후, 같은해 11월 중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l'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살처분 등으로오리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위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그 종료일을2016. 11. 10.로 보았다.

# (나)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

#### ① 개시일

피고는,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는 2016. 1. 13. 계열화협의회 또는 계열화사업자영업책임자 회합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아, 그 개시일을 2016. 1. 13.로 보았다. 다만, 원고는 2016. 11. 10. 계열유통협의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에가담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 개시일은 2016. 11. 10.로 보았다.

#### ② 종료일

피고는 원고 등 8개사는 2017. 8. 10. 계열화협의회에서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이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합의를 중단하고, 기준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았다. G은 2017. 8. 21.에, F·D·E는 2017. 8. 24.에, C은 2017. 8. 25.에 기준가격을 각 인하하였고, 기준가격 책정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3개사(I, 원고, J)의 경우 5대 계열화사업자보다 기준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5대 계열화사업자에 비해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요계열화사업자들이 기준가격 인하를 완료한 2017. 8. 24.에 기준가격을 인하한 것으로보고, 해당일을 종료일로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구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2021.12.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III. 2. 나.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의 종료일을 2017. 8. 24.로 보았다.

## (2) 관련매출액

피고는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 및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의 관련매출액을 사업자들이 법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오리 신선육의 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위 각행위와 무관한 군납·학교급식 관련 매출액,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 냉동육·부산물·훈제 등 가공제품관련 매출액은 제외하였다.

한편 일부 사업자는 대리점에 판매하는 오리 신선육 가격을 고정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였는데, 이 경우 계약체결 당시 오리 신선육 시세를 반영하여 고정단가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고정단가 계약체결 시점이 위반행위 기간 중이면 이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고, 고정단가 계약체결 시점이 위반행위 기간 전이나 후이면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의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 및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2016년 생산량 제한 및 가격인상 등 행위의 관련매출액

(단위:원,부가가치세 제외)

합의내용	거래처	법 위반 기간	소계	관련매출액
생산량제한	전 거래처	2016. 1. 13.~2016. 11. 10.	10,812,255,746	25,498,057,946
가격인상	대리점	2016. 11. 11.9)원고의 가격인상 등 행위의 개시일은 2016. 11. 10.이나,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의 종료일과 겹치므로 가격인상 등 행위의 위반기간을 2016. 11. 11.~2017. 8. 24.로 조정하였다.~2017. 8. 24.	14,685,802,200	

## (3) 부과기준율

피고는, 오리 산업 특성상 공동행위를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만드는 구조적 배경이 존재하는 점, 전형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 및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 (4) 구체적 산정기준

# (가) 과징금 산정기준

위 (2)항 기재 관련매출액에 위 (3)항 기재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509,961,158원이다.

# (나) 1 · 2차 조정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조정 및 2차 조정 사유가 없다고 보아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유지하여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정하였다.

#### <표 11>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산정기준	1차 조정	2차 조정	2차 조정 산정기준
509,961,158	-	미감경	509,961,158

#### (5)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구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위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509,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 <표 12> 부과과징금

(단위: 원)

2차 조정 산정기준	부과과징금 조정	부과과징금
509,961,158		509,000,000

# 라) 최종 부과과징금

피고는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와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 및 이 사건 가격인상등 행위에 대한 각부과과징금을 합산하여 원고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509,000,000원이다.

#### <표 13> 원고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	2016년 생산량 제한 및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	최종 부과과징금(합계액)		
0	509,000,000	509,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 1) 처분사유의 부존재
- 가)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행위 관련 주장
- (1) 2012년 생산량 제한 합의 부존재

원고 등 6개사가 2012. 4. 12. 계열화협의회에서 오리 입식량 감축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오리 입식과잉 및 가격폭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입식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추상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이고, 위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 사이에 입식량을 20% 감축하기로한 합의한 사실이 없다.

#### (2)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는 ① 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계열화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고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명령에 근거한 것이고, ② 설령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구 축산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및 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자조금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는 구 공정거래법제58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3)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 부존재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물은 공급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크고, 농축산물의 수급불균형과 가격급등락이 지속될 경우 농축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며 소비자의 후생을 해칠 수있다. 이러한 농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면,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근접한 상황에서 오리 신선육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공익적 목적의 공동행위이다. 따라서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

#### (1)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에의 가담사실 부존재

원고는 사단법인 U(이하 'U'라고 한다) 회원 업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회의인 2016. 11. 10.자 계열유통협의회 및 2017. 8. 10.자 오리 계열업체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이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가)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는 주로 C, D, E, F, G, I 등 6개의 계열화사업자영업본부장이 참석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위 사업자들은 'V 카톡방'을 통해 수시로 가격정보를 공유하거나 가격인상을 합의 · 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과 V 카톡방 모두에 참여하지 않았고, 위 사업자들로부터 유선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2016. 11. 10.자 회의는 2017년 종오리 배정물량을 정하고, U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U 공식회의이고, 그 당시 회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오리 가격체계를 기존 '호' 단위에서 3단계 규격(S, M, L)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논의하였을 뿐 가격인상합의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2017. 8. 10.자 회의 안건에는 오리 판매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2017. 8. 10.자회의에서 가격인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일부 관계자의 추측성진술뿐이다. 일부계열화사업자들이 위회의 직후인 2017. 8. 14.경기준가격을 인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등 별개 합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 원고의 가격인상 등 행위 중단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

설령 원고가 2016. 11. 10.자, 2017. 8. 10.자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2016. 11. 22.경 판매가격을 인하한 점, ② 그이후부터 2017. 8. 10.까지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가격인상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최소한2016. 11. 22.경 탈퇴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는 2016. 11. 22.경부터 2017. 8. 9.까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법 위반기간을 이 사건 가격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전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 2) 재량권 일탈 · 남용

#### 가) 종결처리 하지 않은 위법

① 원고는 영광군 본점, 함평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원고의 함평지점은 2019. 3. 31. 폐업하였고, 본점은 2021. 7. 1.부터 휴업한 상태인 점, ② 원고가 상용오리 도압을 의뢰하였던 W에 대한 지분과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X이 보유한 농업회사법인 P 유한회사의 지분 및 X이 체결한 '종오리 사육 및 종란 납품계약'을 C에 양도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폐업에 준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심사관 전결로 종결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

설령 이 사건 생산량 제한 및 가격인상 등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1)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위법

원고 등 사업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생산량 제한 합의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므로, 구 과징금고시 III. 2. 다. (1)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과징금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 (2)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위법

2012년 및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는 실행되지 않았고 그 기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구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바)에 의하여 정액과징금이부과되어야 한다.

#### (3) 법위반 기간 관련 위법

설령 원고가 2016. 11. 10. 및 2017. 8. 10.자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전 기간을 원고의 법위반기간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4) 부과기준율 산정 위법

피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4대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2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종계사업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를 적법한 유통조절명령으로 신뢰하고 합의한 점, 공급과잉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방지하는 효율성 제고 측면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원고 등 사업자들에게는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 등 사업자들의 생산량 제한행위(이하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라고 한다)

### 가) U의 역할 및 구성

U는 오리고기 홍보 및 회원사의 소득향상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민법 제32조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고 설립된 단체로서, 오리 계열화사업자(10개사)와 그외 농가(797개)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U는 오리농가 지도, 오리 산업 관련 조사통계업무, 오리 자조금 업무, 오리 유통가격 안정 및 수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열유통분과, 부화분과, 사육분과, 토종오리분과의 4개 분과위원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 오리 수급조절협의회 등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U가 운영하는 회의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열유통분과위원회10는 협회 소속계열화사업자11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총회에서 선출된 계열유통분과위원장이 요청하거나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개최된다. 통상적으로 계열유통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오리 시장 상황 정보(방역, 사육량, 가격수준 등)와 계열유통분과위원장이요청한 안건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U가 회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다.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는 U의 회원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P 유한회사의 연도별 원종오리 수입량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의 협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화 분과를 대표하는 5명 및 계열유통분과를 대표하는 5명이 3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한다.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 8. 30.경 오리 수급조절 관련 의견수렴 · 소통을 위해 설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U가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는 생산자 · 정부관계자 · 학계 · 소비자단체로 구성되어 오리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축산물 수급상황별 대응방안, 수급안정대책 추진 등에 관하여 논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U는 사무국으로서 수급 · 가격동향관련 분석 및 연구, 협의회 회의소집 ·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2)

한편, U는 구 축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축산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로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구 축산자조금법 제2조 제5호, 제14조), U 내부에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사무국을 두고 있다(구 축산자조금법 제17조). 오리 자조금은 U 사무국에서 오리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표 14〉기재와 같다.

농식품부 농식품부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 사업 시행 자조금 농식품부로 사임검토 사임승인 사업계획 사업 요청 (계획보완) 통보 결과보고 수립

<표 14> 오리 자조금 집행절차

# 나) 2012년 생산량 제한행위

#### (1) 합의 배경

2012년 4월경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 시세가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생산원가인 1수당 6,000원~6,500원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	8,103	7,700	7,700	7,700	8,039	8,200	8,016	8,168	7,881	7,800	7,410	6,875
		7,438										
2011	8,258	9,359	10,28	11,23 3	11,24 8	9,073	8,409	8,267	7,800	7,422	7,200	7,200

<표 15> 통오리 20호 가격동향 (2011~2013년)

# (2) 2012. 4. 12.자 계열화협의회 회의 내용 및 결과

원고 등 6개사의 대표(임원)들은 2012, 4, 12, U의 계열화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오리수급 등 산업

동향 및 기타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오리 입식량을 20% 감축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2012. 4. 12. 회의 결과는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 <표 16> 2012. 4. 12. 계열화협의회 회의 결과

#### 5. 회의내용

- 주요내용
- 1) 오리수급 등 산업 동향
- 현재 오리 입식과잉 및 소비위축에 따른 오리가격 폭락 등으로 전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 따라서 계열, 유통, 부화 등 전체 업계가 협력하여 안정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참
- 우선 대부분의 오리 물랑을 생산하는 계열업체가 앞장서서 입식량 20% 감촉 등 자발적인 노 력이 필요하며, 이로써 유사계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이후, U는 2012. 4. 16. 구성사업자들에게 새끼오리 입식량 20% 이상 자진 감축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U가 2012. 4. 16. 발송한 공문의 내용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2012. 4. 16.자 U의 발송 공문								
문서번호 AD								
시행일자 2012. 4. 16.								
수 신 계열·유통업체								
제 목 입식과잉 등에 따른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협조요청								
(중략)								
(공략)								
4. 이에 4. 12. 대전에서 개최된 계열화협의회에서는 오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F1오리의 입식								
및 이에 생산된 오리의 도축금지 등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각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								
리는 바입니다.								
- 다음 -								
□ 오리 입식량 자진 감축운동 : 4. 16.일부터								
○ 새끼오리 입식량 20% 이상 자진 감축운동								
□ 계열유통업체의 오리 감축계획제출(양식)								
업체명 주당 입식량 감축 후 감축량 비고 (3일 평균) 입식량 (감축비율 %) 비고								
*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12. 4. 16.까지 협회로 제출요망								

### (3) 합의 실행

원고 등 6개사가 실제로 새끼오리 입식량을 20% 이상 감축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J의 대표이사 AE은 피고 조사과정에서 "당시 거래하고 있던부화장에 병아리 공급물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다)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

# (1) 합의 배경

2015년 말경 국내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부터 통오리 20호 가격시세가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다.

연도 1월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 9,500 2017 8,642 8,614 8.990 9,283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471 6,533 7.781 2016 6,597 6,500 6,500 6,500 | 6,500 | 6.500 | 6.500 | 6.500 | 6.500 6,500 8,000 2015 8,581 8.597 8.817 8,500 8.500 8.500 8.500 8.017 7.774 8,000 7,339

<표 18> 통오리 20호 가격동향 (2015~2017년)

#### (2) 2016년 1월 '종오리' 감축 합의

#### (가) 합의 내용

원고, C, D, E, G, I 및 J 등의 대표(임원)들은 2016. 1. 13. U의 2016년 제1회 계열유통분과위원회회의에서 종오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위 사업자들은2016. 1. 28.경 개최된 2016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에서 종오리 감축 방안을구체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업체별 산란 중인종오리(25~70주령)의 18%를 감축 대상으로 하되, 단 71주령 이상 종오리의 경우 의무도태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U는 2016. 2. 2. 업무연락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위 합의에 따른 종오리 감축추진계획을 통지하고, 각 사로 하여금 이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2016. 2. 4.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2016. 2. 16. 위 종오리 감축 방안을 구성사업자들에게공문으로 통지하여, 그 내용대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던F와 H은 이후 합의 내용을 U로부터

전달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 (나) 합의 실행

아직 주령이 짧아 상대적으로 상용오리 생산 잠재력이 높은 25~70주령 종오리에대해서는 당초 감축계획(67,205수)보다 많은 82,066수가 감축되었고, 사업자별 감축수량은 C 17,349수, E 19,716수, F 15,935수, G 6,325수, H 4,832수, I 2,304수, 원고 3,530수, D 1,550수, J 1,295수, L 1,770수 등으로 확인된다.

# (3) 2016. 4. 8. '종오리' 감축 합의

# (가) 합의 내용

원고, C, D, E, F, G, I 및 J 등 8개사의 대표(임원)들은 2016. 4. 8. 제2회 계열유통협의회 회의에서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을 대상으로 3월말 기준 업체별 보유 종오리(632,721수)의 10% 수량을 감축하되, 25주령~70주령 이내의 종오리를 감축(약 63,272수)하고, 71주령 이상 4,962수는 당연도태 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H은 2016. 4. 8.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합의 내용을 U로부터 전달받고 이에 동의하였다.U는 같은 날 구성사업자들에게 위 계열유통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종오리 감축방안을 업무연락을 통해 알렸고, 2016. 4. 9. 구성사업자들에게 종오리 감축 추진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독려하며, 2016. 4. 12.까지 2차 종오리 감축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추가로 전송하였다.

#### (나) 합의 실행

원고 등 사업자들은 총 55,701수의 종오리를 감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상용오리 생산량이 약 540만수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4) 2016. 11. 10. '종오리·종란' 감축 합의

#### (가) 합의 내용

원고, C, D, E, F, G, I 및 J 등 8개사의 대표(임원)들은 2016. 11. 10. 계열유통협의회 회의에서 오리수급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각 업체별 부화중인 종란(주령별30% 해당 수량)도태', 중기 대책으로 '각 업체별 현재 사육중인 산란 종오리 중 60주령이상의 종오리 조기 도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H은 2016. 11. 10.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의 내용을 U로부터 전달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2016. 11. 10. 회의 결과는 아래 〈표 19〉 기재와 같다.

#### <표 19> 2016, 11, 10, 계열유통협의회 회의결과

#### 4. 회의결과

- 가. 오리수급안정을 위한 중ㆍ단기 대책 추진
- 단기대책
- 각 업체별 부화중인 종란(주령별 30% 해당수량) 도태
- \* 도태 시행일자를 정하여 시행하고 각 업체 실무자들이 합동으로 도태 현장 방문ㆍ점검
- 중기대책
- ① 각 업체별 현재 사육중인 산란 종오리 중 60주령 이상 종오리 조기 도태
- ② 2017년 종오리(PS) 배정물량 조정 검토

#### (나) 합의 실행

그러나 위 2016. 11. 10.자 합의는 같은 해 11월 중순 AI 발생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다.

#### 2)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

### 가) 합의 배경

2016년 1월부터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 시세가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리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오리 계열화사업자간 경쟁이 심해졌다. 이에 오리 계열화사업자들은 통오리를 호수 구분 없이판매하거나 토치비나 발골비와 같은 비용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이에 오리 계열화사업자들은 오리 신선육 가격을 상승시키기위해 앞서 살펴본 생산량제한 이외에 직접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가격 요소를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 나) 합의 과정 및 내용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는 주로 C, D, E, F, G, I, J 등의 영업본부장들의 모임(이하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다가, 2016년 말경 Al가 발생하여 계열화사업자간 모임이 금지된 후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원고 등 8개사가통오리 20호의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인상, 할인금액의 폭 및 제비용(토치비,발골비 등)의 하한선 등을 합의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의 구체적인 합의방법과 내용 등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표 20>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 구체적인 합의내용

연 번	함의 일시 (인상일)	방법	참석자	합의 • 논의 내용			
1	2016. 1. 13.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C, D, E, F, G, I, J	<ul> <li>기준가격: 6,000원</li> <li>그 외 동오리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에서 호수당 100원을 가감하여 책정(이하 '호수당 가감금액'이라 한다)</li> <li>토치비, 발골비 하한: 각 100원, 600원</li> </ul>			
2	2016. 3. 22.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C. D. E. F. G, I, J	<ul> <li>기준가격: 6,500원</li> <li>호수당 가감 금액: 100원</li> <li>할인폭 상한: 500원</li> </ul>			
3	2016. 4. 12.	계멸화 영업책임자 회함	C, D, E, F, G, I, J	<ul><li>기준가격: 7,500원</li></ul>			
4	2016. 6. 28.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함	C. D. E. F. G. I.	기준가격: 5,800원   호수당 가감 금액: 200원   할인폭 상한: 500원			
5	2016. 8. 26	유선연락	C, D, F	• 통오리 23호 가격 : 6,500원 • 호수당 가감 금액 : 200원			
6	2016. 11. 10.	U 계열유통협의회	C, D, E, F, G, I, J, A(원고)	<ul> <li>중량별 호수 체계에서 3단계 규격 체계(S:2.0kg / M:2.3kg / L:2.6kg)로 변경</li> <li>각 규격 가격은 S는 5,500원, M은 6,500원, L은 7,500원으로 설정</li> </ul>			
7	2016. 11. 22.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C, D, E, F, G, I, J	기준가격 : 6,000원   호수당 가감 금액 : 100원   할인폭 상한 : 500원			

8	2016. 12월 초 (2016. 12. 5.)	유선 연락	C. D. E. F. G. I. J	■ 기준가격 : 7,000원 ■ 할인폭 상한 : 500원
9	2016. 12월 초 (2016. 12. 12.)	유선 연락	C, D, E, F, G, I, J	■ 기존가격 : 8,000원 ■ 할인폭 상한: 500원
10	2016. 12월 중순	유선 연락	C, D, E, F, G, I, J	■ 기준가격 : 9,000원 ■ 할인폭 상한 : 500원
11	2017. 1월말	유선 연락	C, D, E, F, G, I, J	■ 기준가격 : 10,000원 ■ 할인폭 상한 : 500원
12	2017. 7. 19.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참	C. D. E. F. G. I, J	기준가격 : 11,000원   호수당 가감 금액 : 100원
13	2017. 8. 10.	U 계열업체 대표자회의	C. D. E. F. G. I. J. A(원고)	<ul> <li>기준가격: 12,000원</li> </ul>

# 3) 오리 산업의 특수성 및 수급조절 제도

# 가) 오리 산업의 특수성

농축산물은 필수재로서 수요보다 공급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공산품과 달리 작물을 식재하거나 가축을 입식한 후 일정기간 재배 또는 사육과정이 필요해 수요또는 가격변화에 대응하여 즉각적으로 공급량을 변동시키는 것이 어렵고, 계획된 공급량의 경우에도 기상변화, 가축 질병 등 외부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서, 공급량이조금만 부족하거나 많아도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을 보인다.오리 신선육의 경우에도 생물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사육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원종오리 수입부터 도축까지 약 16.5개월이 소요된다. 오리의 생육속도는 계절적 요인에영향을 받아 연간 일정하지 않고(오리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1월부터 2월까지 기온 등 영향으로 성장속도가 둔화된다), 적정 출하기(42일) 이전에 출하할 경우 고기의 양이 충분하지 않게 되고, 적정 출하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층이 두껍거나 육질이 질겨지는 등 품질이 저하되게 되므로, 상용오리의 생산주기가 약 6주에 불과하다.

2003년 12월 무렵 AI가 최초 발생한 이래 총 발생건수 1,118건 중 603건(53.9%)이 오리에서

발생하여 오리에 대하여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AI 발생 시 살처분과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하여 오리 사육마릿수가 급감하게 되고, AI가 종식되더라도 살처분 농가에 오리 입식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리 생산판매업계에는 수급불안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오리 신선육은 다른 육류에 비해 변질되는 속도가 빨라 신선육 상태로 신속히 유통 · 판매되어야 하고, 그 유통기한은 10일 정도이다. 오리고기는 지방의 녹는점이 낮아냉장 상태에서 일단 도축되면 장기보관이 어렵고, 도축 후 3~4일이 지나면 변질이 시작되어 5일 이내에 냉동하여야 하는데, 냉동 저장할 경우 상품가치가 하락하게 된다.통상 대리점 및 오리 훈제공장도 신선육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오리 신선육은 생산된 이후에는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렵고 잉여 물량을 냉동 제품으로 보관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오리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연간 안정적인 오리고기 공급 및 오리 계열화사업자의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오리 연간 도축마릿수는 2012년부터 매년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2년 9,040만 수에서 2021년 4,928만 수로 45.5% 감소하였다. 오리 관련사업 매출도 지속적 줄어드는 추세이고, 주요 오리 계열화사업자의평균이익율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5% 수준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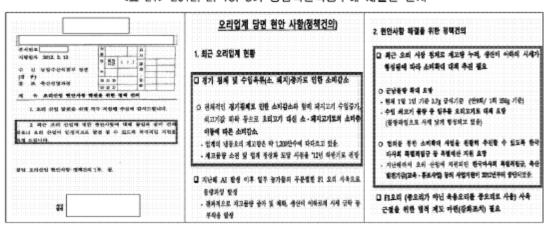
#### 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오리 수급안정 정책

#### (1) 오리 수급안정 정책 개요

오리 산업의 특수성 및 그에 따른 수급불균형 · 가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지원하고 있다. 오리 신선육 사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 국 축산자조금법과 구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 등에근거하여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하고 오리 자조금 제도 등을 활용한 수급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리 자조금은 축산업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의무거출금에 정부지원금을더하여 조성 · 운용되는 자금으로(구 축산자조금법 제2조 제4호), 오리고기 공급 과부족등으로 수급불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촉진, 자율적 수급안정 사업 등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구 축산자조금법 제1조, 제4조).

# (2)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안정 정책

(가) 2012년 당시 오리시장 재고량 누적 및 소비감소로 인해 오리고기 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되자 U는 2012. 2. 13.경 농림축산식품부에 소비확대 대책 추진 등오리 산업에 대한 지원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건의를 하였다. U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



<표 21> 2012. 2. 13. U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문서

(나) U는 2015. 12. 23.경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오리 자조금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오리 사육마릿수 증가로인한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해 U가 신청한 사업비 2,000만 원에서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리 자조금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아래〈표 22〉 기재와 같은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수급안정을 위한 공급량 조절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협의 및승인 절차를 준수할 것', '한편, 최근 오리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등 수급상황이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소비홍보사업 등 추진으로 수급안정에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국민 중실의 정부3.0을 통해 국민행복을 키워갑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제목 2016년도 오리자조금 사업계획 승인알림

(중략)

16년도 오리 자조금 사업계획을 불임과 같이 승인하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수급안정을 위한 「공급량 조절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협의 및 승인절차 준수

(중략)

3. 한편, 최근 오리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등 수급상황이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소비홍보사업 등 추진으로 수급안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U는 2016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종오리 감축방안을 2016. 2. 12. 오리수급조절협의회에 상정하였고, 종오리 감축방안은 그대로 의결되었으며, 이후 오리 수급조절협의회 시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였다.

이어서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는 오리수급조절 추진결과 및 종오리·종란 감축방안에대하여 제2회부터 제4회까지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였고, 각 회의결과 및 감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승인받아 종오리·종란 감축을 실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 16, 30, 33 내지 38호증, 을 제7, 8, 26, 27, 28, 34, 36,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 1)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에 관한 판단
- 가) 생산량 제한 합의의 존재 여부
- (1)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원고 등 사업자들이 2016년 3차례에 걸쳐 상용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부모오리인종오리 및 종오리가 생산한 종란을 감축함으로써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6개사가 2012. 4. 12. 새끼오리 입식량을 20%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2년 및 2016년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과 연계된 입식량 및 종오리·종란의 수를 감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원고 등 6개사는 2012. 4. 12. U의 계열화협의회 회의에서 입식과잉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감축대상과 구체적인 감축비율을 정하였다.

이어서 U는 2012. 4. 16. 새끼오리를 입식하여 오리 신선육을 생산하는 모든 계열화사업자들에게 공문을 통해 위 회의에서 정해진 내용을 알리며 참여를 독려하였는데, 위공문에는 2012. 4. 12. 회의 결과 새끼오리 입식량을 20% 감축하기로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일이 2012. 4. 16.로 특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4. 12. 회의에서 사업자들 사이에 입식량 감축 필요성에 관한추상적인 공감대만 형성되었고, 입식량 감축을 실행하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된 사실은없었으며, U가 작성한 회의 문건

또는 공문은 새끼오리 입식량 감축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실행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AF은 피고 조사과정에서 2012. 4. 12.자 회의에서 새끼오리 입식량을 20%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갑 제15호증), ② 2012. 4. 12.자 회의에 참석하였던 다른 사업자들도 피고 조사과정에서 새끼오리 입식량을 20% 감축하는 내용의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J은 당시 거래하고있던 부화장에 병아리 공급물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2. 4. 12.자 회의에서 새끼오리 입식량 감축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공감대만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원고 등 6개사는 입식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 실행 여부가 개별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나)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의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정당한 행위 해당 여부

#### (1)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 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등참조).

#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는 구 축산계열화법 제5조에 따른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의결된 수급조절 방안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한 개별법률 조항의 근거 없이 발한 일반적인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축산계열화법 제5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축산계열화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호로 제정되어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는 생산조정 또는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축산계열화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생산자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축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등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해당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생산하는 생산자등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구 축산계열화법 및 구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에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고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 등의 기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생산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 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을거쳐 해당 축산물의 생산자등 대표, 재적회원, 해당 가축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생산자등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원고 등 사업자들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요청에 대한 구 축산계열화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또는 찬성의결을 위해 종오리 · 종란 감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16년 생산량 제한과 관련하여 피고와협의를 거쳤다거나 생산조정기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이상 구 축산계열화법 제5조 제1항 및 구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정하는 바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로 든 법률 즉, ① 구 정부조직법(2013. 3. 23. 법률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1. 6. 7. 대통령령 제2296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42호는 행정작용법적 근거가 아닌 행정조직법적 근거에 불과하고, ② 구 축산법 제1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를정한 것이며, ③ 구 축산자조금법 제1조, 제4조는 축산물의 수급불안 시자율적인 수급안정사업에 축산자조금을 운용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이를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렵다.

### 다)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 인정 여부

#### (1) 관련 법리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당해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결과와 아울러 당해 공동행위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한 구체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등 참조).

# (2) 농축산업 분야에서 부당성 판단기준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농축산업의 경우 생산자들사이의 일정한 공동행위가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산업의 유지 · 지속을 위한것으로서 농축산물 가격을 부당하게 상승시켜 공정거래를 저해할 정도에 미치지 않는경우라면 이러한 공동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를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에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농축산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농축산물의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구조는 국가경제의 기본적 토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유지와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그런데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물은 가격변화에 대응하여 공급량을 변동시키기 어려운데 반하여, 가격에 따른 수요 변화량도 크지 않아 공급량이 과잉·과소한 경우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하면 농축산물이 시장에 과잉 공급될 경우 그 시장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이 경우 생산자의 수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생산자는 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비용을감당할 수 있는 일부 사업자만이 시장에 남아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그 이후 생산자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분을 수입하여 해결함으로써 수입의존성이 커질 수 있다. 이와같이 농축산물의 수급균형이나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안전한 농축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국가의 과제로 명시하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 구 축산계열화법, 구 축산자조금법 등 축산 관계 법률에서도 축산물의 수급관리, 적정한 가격의 유지, 공급안정 등을 통해 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농축산물의 수급조절을 허용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축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농축산물의 최종 소비자인 전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농축산물의 수급균형을 달성하여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농축산물생산자의 수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농축산물의 경우 공급 과잉 · 과소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사후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은 예산집행이나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다. 더욱이 농축산물 시장이개방된 이후에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제한받게 됨에 따라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생산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수급조절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나)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바탕으로 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제거하고 사회복지 ·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등 참조).

그리고 헌법은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농·어업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농·어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체의 자율적인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있다.

이는 농·어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 결정의 취지참조), 이러한 자조조직은 농·어민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일정한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공동행위를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민자조조직의 활동이 그 활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유경쟁의 예외로서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조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하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의 농·어민에는 축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농가 소득증대,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농업분야에 관한 특별한 법률규정을 두어 농산물생산자 또는 그 단체의 일정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이나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 ① 미국은 1922년에 농산물생산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자신들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캐퍼-볼스테드법(Capper-Volstead Act)13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 시행 이전에는 농산물생산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독점규제법인 셔먼법(Sherman Act)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즉 위 법 제1조14는 "농민, 식목인, 목장인, 낙농인, 견과 또는 과일생산자 등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자는 회사 기타 형태의 단체로 결집하여 그 단체에 가입한 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으로 가공ㆍ판매준비ㆍ처리ㆍ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들 단체가 일정한 공동행위를 하더라도 독점규제법인 셔먼법(Sherman Act) 적용을 면제하였다. 다만 위 법 제2조15는 연방농무부장관이 농산물생산자 등 단체가 농산물 가격을 부당하게 상승시킬정도로 시장을 독점하거나 거래제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하였다.
- ② 유럽공동체설립조약(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제36조16에 의하면 유럽경쟁법은 유럽이사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농산물의 생산과 거래에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유럽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1184/2006 of 24 July 2006 제2조 제1항17은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또는 농산물의 저장ㆍ처리ㆍ가공을위한 공동시설의 이용 등에 대하여 동일한 회원국에 속하는 농업인들, 농업인조합들또는 조합 연합체들의 합의ㆍ결의ㆍ행위에 대해서는 위조약 제81조 제1항(반경쟁적부당한 공동행위 금지)18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합의 등이 동일한가격 부과를 강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위조약 제33조의 목적19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독일경쟁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Competition Act)
  제28조는 농업분야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농산물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쟁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28조 제1항20은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또는 농산물의
  저장ㆍ처리ㆍ가공을 위한 공동시설의 이용에 관한 농업생산자들 사이의합의 또는 농업생산자
  조합들이나 조합 연합체들의 합의와 결의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거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합의나 결의에 대하여 제1조(경쟁 제한적 합의 금지)21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는 오리 신선육 생산·판매업자들의 자조조직의 활동으로서 오리 신선육 생산·판매업의 유지·존속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로 인하여 오리 신선육 가격이부당하게 상승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는 그 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커서공정거래법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U는 오리산업 종사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U는 오리 계열화사업자와 가축 농가를 회원으로 하는데,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에 가축을 사육하도록 위탁한 후 생산된 축산물을 출하받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단지 생산된 완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 및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U는 오리고기 생산자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있다. U는 총회ㆍ이사회 등 내부에 여러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이러한 회의체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U에는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한 축산업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ㆍ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축산자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U의 구성, 설립목적 및 활동내용, 의사결정 방식, 협회에 대한재정지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U는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5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자조조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U를 통해 이루어진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농업을 보호하고 농ㆍ어민의 자조조직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는 모두 U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지 생산량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 당시 오리 신선육 가격 시세는 생산원가 수준이었고, 시장에 유통되는

오리 신선육 공급량이 많아지던 추세였으므로,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오리 시장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갈 위험도 존재하였다. 시장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간 경우에는 사업자들은 판매를 하더라도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는 오리 신선육 시장가격이 적어도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 오리 신선육 사업을 지속 ·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오리 신선육 시장가격을 부당하게 상승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리 신선육은 사육기간, 계절에 따른 생육속도 차이, 빈번한 AI 발병과 방역조치 등으로 인하여 공급량 조절이 어렵다. 더욱이 공산품과 달리오리 신선육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일정 기간 보관한 이후에는 판매하기 어려우므로 폐기하거나 냉동 보관할 수밖에 없는데, 폐기하더라도 그 생산비용만큼은 손실이 되고,냉동 보관의 경우 가치하락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리고기가 시장에 과잉 공급되어 시장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오리계열화사업자들이 손실을회피할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시장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감에따라 시장을 이탈하는 생산자가 생기면 공급량이 줄어들어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농축산물의 경우 생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사업자만이 시장에 남게 되면 오히려 해당 사업자에게 시장지배력이 집중될 뿐 아니라 그 후 가격상승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렴한 농축산물을 수입하게 될 경우 국제적 상황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국내 식량공급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오리 신선육 시장가격이 생산원가에 근접한 상황에서 원고 등 사업자들이 오리 신선육 시장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라) 원고 등 사업자들은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를 실행하기에 앞서 U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오리 신선육 공급과잉에 따른 생산비 이하의 오리 판매가격 형성되는 문제를 공유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 필요성을 인지한 후 오리자조금을 증액하는 등 자율적 수급조절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생산자,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으로 구성된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감축방안이 검토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시행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하는등

수급안정 대책 전반을 감독하였다(갑 제38호증).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로 인하여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상승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 2)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 인정 여부

### 가) 관련 법리

- (1)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다(대법원 2013.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 (2)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그 정보 교환이 사업자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들 사이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 · 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 · 산출량 등의 사업자간 외형상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 내용, 정보 교환만으로 가격담합의 목적이 바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위 합의가추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두56346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7, 18, 26호증, 을 제19, 20, 25, 26, 30, 37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2016. 11. 10. 합의

(가) 원고 등 사업자들의 대표(임원)들은 2016. 11. 10. 계열유통협의회 회의에서 오리 신선육

가격체계를 기존의 중량별 호수 체계에서 3단계 규격 체계로 변경하는 안건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는 아래 〈표 23〉 기재와 같다.

### <표 23> 2016. 11. 10.자 계열유통협의회 회의결과

### 4. 회의결과

- 나. 오리 유통가격 조사 체계(협회가격게시) 개선
- 1) 생체오리
- (현행) 3.0kg 기준 → (개선) 3.4kg 기준
- 2) 신선육
- (현행) 2.0kg 기준 → (개선) S:2.0kg 기준 / M:2.3kg 기준 / L:2.6kg 기준

(나) 이어서 2016. 11. 18.경 개최된 2016년 제4회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는 기존의 마리 단위 판매에 따른 업체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고중량 출하 추세를 반영하여 3단계 중량단위 규격체계로 가격조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위 회의결과 자료에 의하면 위 협의회에서 결정된 오리 가격조사 체계 개선안은 규격기준을S(2.0kg), M(2.3kg), L(2.6kg)로 변경하고, M 규격을 기준으로 S와 L은 M의 가격에서 1,000원을 가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6년 제4회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아래 〈표 24〉기재와 같다.

### <표 24> 2016년 제4회 오리 수급조절협의회 회의결과

### 5. 결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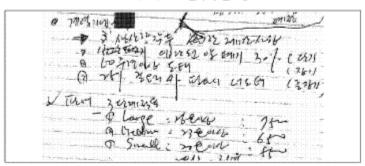
- 나. 오리 가격조사체계(혐회 게시방법 등) 개선
- 현행 마리단위 판매에 따른 업체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단계에서의 비싸다는 인식 등을 전환하기 위하여 중량단위 거래가 필요
- ⇒ 현재 고중량 출하 추세를 반영하고 향후 중량단위 거래의 정착을 위해 가격 조사 게시체계의 개선을 추진

<오리 가격조사체계 개선(안)>

구분	64		계선(안)		MД
	규격 기준	가격계시 기준	규적 기준	가격계시 기준	-1,20
신선육	2kg			S: - 1,000원 M: 23호 기준 평균가 L: + 1,000원	
생세오리	3kg	신선육 - 1,500원	3.4kg	M2121 - 1,50041	

(다) J의 AE의 업무수첩에는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오리 신선육을 Small, Medium, Large의 3단계 규격을 적용한다는 내용과 각 규격에 대한 규모 기준 및 가격이 기재되어 있었다.

<표 25> J AE 업무수첩 메모



# (2) 2017. 8. 10. 합의

(가) 원고 등 8개사는 2017. 8. 10. 오리 계열업체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가금산업 발전대책, AI 방역관리 개선방안 및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관련 방안 등 오리 계열화사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6〉기재와 같다.

#### <표 26> 2017, 8, 10, 오리 계열업체 대표자회의 개최결과

### 4. 주요내용

- 가. 가금산업 발전대책(안) 및 AI 방역 개선대책(안)
- 상기 대책(안)의 주요내용 설명과 앞으로의 업계 진행방향 논의
- ⇒ 오리 계열업체들은 계열화사업과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기로 결정
- 나. AI 방역 개선대책(안)에 대한 보안의견
- 대책(안)의 도축장 AI검사 강화 재검토 및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은 오리산업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 해당기간 냉동육 증가에 따른 소비감소(품질저하) 및 수입량 증가, 종오리에서 생산되는 종란 폐기에 대한 보상 방안, 10월 이전 타 지역 집중ㆍ밀집 사육에 따른 부작용, 계열업체 참여 유도 방안 마련 등
- 계열화 AI 방역전문 수의사 채용의 건은 그간 논란이 있었던 가금류 도축 검사 공영화제도와 연계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
- 계열사 자체 수의사가 도축검사 및 AI 방역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등

### 다.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운영

- 오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 ⇒ 17. 8. 11.부터 U 내 "오리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나) C의 AG은 2017. 8. 14. 08:07경 C의 AG 본부장, AH 차장, AI 대리 등 영업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C의 유통카톡방'이라 한다)에 타사 단가 인상여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C의 영업담당자들은 E, D 등 다른 사업체의 단가인상 정보를 위 대화방에 공유하였다. 2017. 8. 14. C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은 아래 〈표 27〉 기재와 같다.

### <표 27> C 유통카톡방 대화내용

AG : 타사 단가인상여부도 파악하여 올려주세요

AJ 등 : 네 알겠습니다.

AK : E, D 오늘부터 1000원 인상 공지 되었습니다.

AL : D 거래처벌 단가인상 통보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14일부터 통오리 기준가 인상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신선 20호 기준 12,000원 호수당 200원 적용이 되며 금번 인상 부분은 업계시세 인상 반영되어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 생략] (다) E 영업본부장 AM는 2017. 8. 14. 08:30경 C, D, E, F, G, I 등 6개 계열화사업자의 영남 지역 영업사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이하 'V 카톡방'이라 한다)에E의 기준가격이 12,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017. 8. 14.자 V 카톡방 대화내용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 <표 28> V 카톡방 대화내용

E AM : 오늘부터 12000원입니다.

F AN : xxx들 E AM : 누구때메… G AO : 혁

a no . ¬

IAP : 갑자기 가격 인상/ 힘든거 아닌가요?

E AM : 까라면 까야지.

IAP: 사전통보 없이 가격 인상 힘드네

E AM : 더커드(C), D, E 선발대. / 동창해. 어차피 없자나. 같이 욕먹어야 덜하지.

C AK : 호당 100원 적용하는 곳 있나요?

(라) 2017. 8. 10. U 계열화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각 계열화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들은 피고조사과정에서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 〈표 29〉 2017. 8. 10.자 회의 관련 사업자들 진술

진술인	진술 내용
C AQ	답) 2017. 8. 10. 계열화협의회가 있었고, 참석 6개 업체22)AQ의 진술은 2017. 8. 10. 계열화협의회에 6개 업체가 참석하였고 참석한 6개 업체 모두가 가격을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위 계열화협의회에 참석한 업체가 9개이고 그중 가격을 인상한 6개 업체는 모두 V 카톡방에 소속된 업체이며, 원고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가 2017. 8. 16.에 일제히 12,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한 결과를 보면 계열사 대표들 모임에서 가격인상 합의를한 것 같습니다. 10,000원 이상의 가격은 이미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합의가 없이는같은 가격으로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G AR	문) 2017. 8. 10. 계열유통화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 간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관련 합의사항이 있었나요? 답) 아니요, 가격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E AS	문) 열람하신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2017. 8. 10. 계열유통협의회 대표자회의를 전후하여 오리 판매사업자들 간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생각되는데, 어떠한가요? 답) AT 회장 등을 중심으로 종종 오리고기 판매가격을 인상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지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IAT	문) 열람하신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2017. 8. 10. 계열유통협의회 대표자회의를 전후하여 오리 판매사업자들 간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생각되는데, 어떠한가요? 답) 아니요. 이날 가격 인상을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J AE	문) 2017. 8. 10. 계열유통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 간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관련 합의사항이 있었나요? 답) 경영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가격을 최소한 특정 금액 이상으로 받자고 이야기도 했기때문에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일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현재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술인	진술 내용
원고 X	문) 열람하신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2017. 8. 10. 계열유통협의회 대표자회의를 전후하여 오리 판매사업자들 간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생각되는데, 어떠한가요? 답) 보여주신 대화내용을 보니 큰 업체들 간에 그러한 논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V	문) 2017. 8. 10. 계열유통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 간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관련 합의사항이 있었나요? 답) 당시 가격 인상하자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기는 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열람하신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2017. 8. 10. 계열유통협의회 대표자회의를전후하여 오리 판매 사업자들 간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생각되는데 어떠한가요? 답) 이 당시와 같이 AI가 터져 오리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사업자들끼리 가격을 인상하자, 이런 때에 돈을 좀 벌어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마) 원고는 2016. 11. 10.부터 2017. 8. 10.경까지 아래 〈표 3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격인상 등합의와 달리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였다.

<표 30> 원고 기준가격 변동 내역

연 번	일시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합의내용	원고 가격 변동 일시	원고 기준가격(원)
6	2016. 11. 10.		2016. 11. 10.	5,422
7	2016. 11. 22.	기준가격을 6,000원으로 인상	2016. 11. 22.	5,400
8	2016. 12. 5	기준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	an an	
			2016. 12. 08.	5,700
9	2016. 12. 12.	기준가격을 8,000원으로 인상	2016. 12. 12.	5,900
10	2016. 12. 19.	기준가격을 9,000원으로 인상	2016. 12. 19.	6,900
			2016. 12. 26.	7,900
11	2017. 2. 1.	기준가격 10,000원으로 인상	_	
			2017. 02. 09.	8.400
			2017. 03. 22.	8,989
			2017. 05. 22.	9,489
			2017. 06. 13.	9,467
			2017. 07. 06.	8,967
12	2017. 7. 19.	기준가격 11,000원으로 인상	2017. 07. 19.	9,289
			2017. 08. 04.	9,722
13	2017. 8. 10.	기준가격 12,000원으로 인상	_	
			2017. 09. 11.	9,100

###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가격인상 등에 관하여 다른 오리 계열화사업자들과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6. 11. 10.자 계열유통협의회 및 2017. 8. 10.자 오리계열업체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오리 계열화사업자들과 오리신선육의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격인상 합의사실이 추인되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1) 2016. 11. 10.자 합의 관련

(가) 원고 등 사업자들은 2016. 11. 10. U가 개최한 계열유통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오리 신선육가격 게시 방법을 중량별 호수 체계에서 3단계 규격 체계로 변경하는 안건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11. 10.자 회의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는 오리 신선육 유통가격 조사기준을 S, M, L의 3단계로 변경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신선육 중량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규격에 대하여 일정한가격이 설정되어있지 않다.

이어서 개최된 2016년 제4회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도 3단계 규격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위 회의결과를 기재한 문서에서도 규격기준을 S(2.0kg), M(2.3kg), L(2.6kg)로 변경하고, 중간규격(M)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S와 L은 기준가격에서 1,000원씩을 가감하기로 결정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U가 주관한 회의 자료에서는 원고 등 사업자들이 오리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 원고 등 사업자들이 같은 날 합의한 종오리감축방안의 경우 계열유통협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그대로 오리수급조절협의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6. 11. 10. 오리 계열유통협의회회에서 오리신선육 판매가격을 일정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안건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의결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는 주로 C, D, E, F, G, I, J의 영업본부장들로 구성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이나 위 사업자간의 유선 연락을 통해 이루어졌고(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연락대상도 아니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U가 구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 중 가격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6. 11. 10.자 및 2017. 8. 10.자 회의뿐이다. U에서 개최한 나머지 회의에서는오리 가격을 설정하는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8. 10. 오리 계열업체 대표자회의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오리 기준가격에 관한 안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U 업무를 총괄하였던 AU전무는 피고 조사과정에서 2016. 11. 10.자 회의에서 가격인상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협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논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들 간에협회 임직원이 없는 자리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신카카오톡이나 업무수첩 내용이 그러한 정황으로는 보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제가무엇이라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을 제36호증 24면)을 고려하면, 2016. 11. 10.자 계열유통협의회 회의 이후 일부 계열화사업자들 사이에 별도의 가격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J의 AE이 작성한 업무수첩(을 제20호증)에는 변경된 오리 신선육 유통가격3단계 규격에 대한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2016. 11. 10.자 회의에 참석한 일부 대표자들은 위 회의에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J AE, L AV, C AQ, D AW(을 제30, 37, 39, 40호증)], AE의 업무수첩은 작성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2016. 11. 10. 계열유통협의회 당시 작성되었거나 해당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위 대표자들의 진술도 AE의 업무수첩을 제시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AE의 업무수첩 기재나 일부 대표자들의 진술만으로는 2016. 11. 10.자 계열유통협의회에서 오리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 2017, 8, 10, 자 합의 관련

(가) 원고 등 사업자들이 2017. 8. 10.경 U가 개최한 오리 계열업체 대표자회의에참석하여 계열화사업 관련 현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7. 8. 10.자 회의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의하면 당일 논의된 안건은 '가금산업 발전대책', 'AI 방역관리 개선방안' 및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신고 방안' 등으로 오리 신선육 가격에 관한 안건이회의에 상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나) 2017. 8. 10.자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도 대부분 2017. 8. 10. 무렵 오리 가격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가격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AQ만이 피고 조사과정에서 위 오리계열업체 대표자회의에서 가격인상 합의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O은 위 대표자회의의 참석자가 아니었고(C의 참석자는 AX

대표였다),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리 계열업체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9개 업체 중 6개 업체(V 카톡방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제외되어 있다)가 일제히 가격을 인상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대표자들사이에 가격인상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일 뿐이다. (다) 2017, 8, 10,자 회의 이후 계열화사업자의 영업담당자 또는 영업사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V 카톡방에서 오리 기준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가격인상 정보를 공유한 시점은 2017. 8. 10.자 회의로부터 4일이 지난 2017. 8. 14.으로, 2017. 8. 10.자 회의 이후 별개의 합의가 이루어질 시간적여유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는 계열화 영업담당자 회합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이루어졌고, U가 개최한 계열화사업자 대표자회의에서는 오리 판매가격에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더욱이 2016년 말경 이후AI로 인하여 오리 계열화사업자들의 모임이 금지되면서 가격인상 합의 방식이 유선 연락으로 변경되었고, C AQ의 피고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제39호증 25면)에 의하면, 2017. 1월 말 가격인상 합의(〈표 20〉 연번 11번)는 C과 D이 가격인상 합의를 한 이후이를 F, E, G 등과 같은 계열화사업자들이 알게 되면 이에 동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2017, 8, 14, V 카톡방 대화내용에서도 특정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고 통보하면다른 사업자들이 이에 맞추어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7. 8. 10. 이후 별개로 가격인상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에 참여한 다른

# (3) 2016. 11. 10.부터 2017. 8. 24.까지 합의 관련

10. 회의 이후 인상된 가격이 전달될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가 2016. 11. 10.자 가격인상 합의 및 2017. 8. 10.자 가격인상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가격인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계열화사업자의 영업담당자들의 회합이나 이들이 참여하는 V 카톡방에 원고의 대표자나 영업담당자들이 참여한 바 없는 이상 원고가 2016. 11. 10.부터 2017. 8. 24.까지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유선연락을 받거나 V 카카오톡 대화방에 속해 있지 않았던 원고에게 2017. 8.

(나) 나아가 통오리 20호 가격동향 〈표 18〉, 이 사건 가격인상 합의내용 〈표 20〉, 원고의 기준가격

변동내역 〈표 30〉을 비교해 보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신선육 기준가격은 이 사건 가격인상 등행위로 합의된 기준가격과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피고가 2016. 11. 10. 합의를 통해 M(2.3kg) 규격 가격을 6,500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16. 11. 당시 통오리 20호(2.0kg) 가격시세는 6,533원이었고, 2016. 11. 10. 원고의 통오리 20호 기준가격은 5,422원으로 시세보다 1,000원이상 저렴하였다. 또 2016.12. 19. 이 사건 가격인상 합의에서 기준가격을 9,000원으로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원고의 기준가격은 6,900원이었고, 2017. 2. 1. 이 사건 가격인상합의에서 기준가격을10,000원으로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9. 원고의 기준가격은8,400원이었으며, 2017. 7. 19. 이 사건 가격인상합의에서 기준가격을 11,000원으로인상하였음에도불구하고 원고의기준가격은 9,289원이었다. 2017. 8. 10. 이 사건 가격인상합의에서기준가격을 12,000원으로인상하였음에도불구하고원고의기준가격을9,289원이었다. 2017. 8. 4. 이후기준가격을9,722원으로유지하다가 2017. 9. 11. 기준가격을9,100원으로인하하였다. 이와 같이원고의기준가격 변동은이사건 가격인상등행위와일치하지않아원고가당시의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경영판단에따라기준가격을변동시킨것으로보인다.

##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으로오리 신선육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이 사건 가격인상 등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준영 판사 김형진 판사 박영욱

- 변경하여 현재의 D이 되었다. 한편, D은 L 영농조합법인(이하 'L'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2018. 5. 18.과 2019. 2. 22.에 각 흡수합병하였다.
- 2)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가 2017. 10. 10. 주식회사 O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회사명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로 변경한 이후, 2019. 10. 11. 회사명을 다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여 현재의 E가 되었다.
- 3)주식회사 G는 2016. 12. 14. 회사명을 현재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다.
- 4)원고 등 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전체 매출액에서 소규모 기타 거래 금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5)L과 M의 점유율까지 합산할 경우, 점유율은 98.4%에 이른다.
- 6)D(L, M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G, I, H, 원고, J이 해당되고, 이하 위 회사들을 통들어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 등 6개사'라고 한다.
- 7)C, D, E, F, G, H, 원고, I, J이 해당된다.
- 8)C, D, E, F, G, 원고, I, J이 해당되고,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 등 8개사'라고 한다.
- 9)원고의 가격인상 등 행위의 개시일은 2016. 11. 10.이나, 2016년 생산량 제한행위의 종료일과 겹치므로 가격인상 등 행위의 위반기간을 2016. 11. 11.~2017. 8. 24.로 조정하였다.
- 10)U는 이러한 계열화사업자들의 회의를 '계열유통분과위원회' 외에도 '계열유통협의회', '계열업체 대표자회의'라는 명칭으로 개최하였는데, 이들은 회의목적 · 구성원 · 논의사항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회의체이다(을 제27호증 13면).
- 11)계열유통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은 계열화사업자와 유통업자인데, 원래 수가 많지 않았던 유통업자는 AI 발생 등으로 더욱 감소하면서, 이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계열화사업자들로만 구성되었다(을 제36호증 3면).
- 12)구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2013. 9. 23.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8호로 제정되어 2016. 9. 23.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사무국)
-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육우는 (사)Y, 돼지는 (사)Z, 닭고기는 AA위원회, 계란은

- (사) AB, 낙농은 AC단체, 오리는 (사)U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수급 및 가격동향 실무 분석
- 2. 수급 및 가격안정, 산업발전방안 관련 연구 추진
- 3. 회의 소집 문서발송, 회의장 설치 등 행정지원
- 4. 사전 회의자료 작성 및 결과보고 등 협의회 운영 실무업무
- 5. 협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실무추진단 운영 시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 13)캐퍼-볼스테드법은 현재 미국 연방법농업법(U.S.C. Title 7. Agriculture)의 제12장으로서 농산물생산자 조직에 관한 규정이다(U.S. Code Title 7. Chapter 12. ASSOCIA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RS).
- 14)현재 미국연방농업법 제12장 제291조(7 U.S.C. §291. Authorization of associations; powers)

Persons engaged in the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s farmers, planters, ranchmen, dairymen, nut or fruit growers may act together in associations, corporate or otherwise, with or without capital stock, in collectively processing, preparing for market, handling, and marketing in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such products of persons so engaged. Such associations may havemarketing agencies in common; and such associations and their members may make the necessarycontracts and agreements to effect such purposes: Provided, however, That such associations are operated for the mutual benefit of the members thereof, as such producers, and conform to one or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이하 생략]

15)현재 미국연방농업법 제12장 제292조(7 U.S.C. §292. Monopolizing or restraining trade and unduly enhancing prices prohibited; remedy and procedure) If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shall have reason to believe that any such association monopolizesor restrains

trade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such an extent that the price of any agricultural product is unduly enhanced by reason thereof, he shall serve upon such association acomplaint stating his charge in that respect, to which complaint shall be attached, or contained therein, a notice of hearing, specifying a day and place not less than thirty days after the servicethereof, requiring the association to show cause why an order should not be made directing it tocease and desist from monopolization or restraint of trade. An association so complained of may atthe time and place so fixed show cause why such order should not be entered. The evidence givenon such a hearing shall be taken under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may prescribe, reduced to writing, and made a part of the record therein. If upon such hearing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shall be of the opinion that such association monopolizes or restrains trade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such an extent that the price of any agricultural product isunduly enhanced thereby, he shall issue and cause to be served upon the association an orderreciting the facts found by him, directing such association to cease and desist from monopolization orrestraint of trade. On the request of such association or if such association fails or neglects for thirtydays to obey such order,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shall file in the district court in the judicial district in which such association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 certified copy of the order and of all the records in the proceeding, together with a petition asking that the order be enforced, and shall give notice to the Attorney General and to said association of such filing. Such district courtshall thereupon have jurisdiction to enter a decree affirming, modifying, or setting aside said order, or enter such other decree as the court may deem equitable, and may make rules as to pleadings and proceedings to be had in considering such order. The place of trial may, for cause or by consent of parties, be changed as in other causes. [이하 생략]

16)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 36.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relating to rules on competition shall apply to production of and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only to the extent determined by the Council within the framework of Article 37(2) and (3)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therein, account being taken of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33.

The Council may, in particular, authorise the granting of aid: (a) for the protection of enterprises handicapped by structural or natural conditions; (b) within the framework of economic development programmes.

17) Council Regulation No. 1184/2006 Article 2.

1. Article 81(1) of the Treaty shall not apply to such of the agreements, decisions and practice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Regulation as form an integral part of a national market organisation or are necessary for attainment of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33 of the Treaty. In particular, it shall not apply to agreements, decisions and practices of farmers, farmers'associations, or associations of such associations belonging to a single Member State which concernthe production or sale of agricultural products or the use of joint facilities for the storage, treatment or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under which there is no obligation to chargeidentical prices, unless the Commission finds that competition is thereby excluded or that the objectives of Article 33 of the Treaty are jeopardised.

18)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1조 제1항은 현재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1조 제1항이 되었다.

19)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33조 제1항은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목적으로 '기술진보를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특히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최적활용',

'농업종사자의 소득증대를 통해농업공동체의 적정할 생활수준 확보', '시장안정', '공급확보', '합리적소비자가격의 확보'를 들고 있다.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 33.

- 1. The objectives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shall be:
- (a)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by promoting technical progress and by ensuring the rational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optimum utilisation of the factors of production, in particular labour;
- (b) thus to ensure a fair standard of living for the agricultural community, in particular by increasing the individual earnings of persons engaged in agriculture;
- (c) to stabilise markets;
- (d) to assure the availability of supplies;
- (e) to ensure that supplies reach consumers at reasonable prices.
- 20)GWB Chapter 5. Special Provisions for Certain Sectors of the Economy Section 28. Agriculture
- (1) Section 1 shall not apply to agreements between agricultural producers or to agreements and decisions of associations of agricultural producers and federations of such associations which concern
- 1. the production or sale of agricultural products, or
- 2. the use of joint facilities for storage, treatment or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provided that they do not maintain resale prices and do not exclude competition. Plant breeding andanimal breeding undertakings as well as undertakings operating at the same level of business shall also be deemed to be agricultural producers.
- 21)GWB Chapter 1.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Restricting
  Competition Section 1. Prohibition of Agreements Restricting Competition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have as their object or effect the prevention,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are prohibited.
- 22)AQ의 진술은 2017. 8. 10. 계열화협의회에 6개 업체가 참석하였고 참석한 6개 업체 모두가

가격을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위 계열화협의회에 참석한 업체가 9개이고 그중 가격을 인상한 6개 업체는 모두 V 카톡방에 소속된 업체이며, 원고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